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정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7.
구 리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①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차***
- ②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③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신청가능
* 3.5톤 이상 자동차 · 건설기계 조기폐차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가능
* 등급 / DPF 부착여부 확인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를 통하여 등급 및 부착여부 조회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예산 : 1,724,200천원(551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3. 2.(수) ~ 2023. 12. 1.(금)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인터넷, 등기우편(12. 1.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로 제출*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상세 절차는 7 ~ 8쪽 - 신청절차 참조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지급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추가보조금(차량구매) : 조기폐차 지급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2. 지원기준 : 다음 4개 사항을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규등록차량은 재등록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함 (자동차등록령 제2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2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 가동 확인(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한 차량

④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압류 내역 존재시 조기폐차 불가능하니 신청 전 확인요망

※ !!3.5톤 이상 자동차 · 건설기계 조기폐차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가능!!

3. 지원금액

○ 기본 지원금 - (폐차 시)

①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②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기본 지원금 추가지원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소상공인 지원가능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 (수십대씩 중복 수령하는 사태 방지)
- ◎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지원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범위 내)
 - ※ 저감장치 미개발은 환경부 자료로 자체 확인하므로 별도서류 제출 필요 없음
- ◆ 장착공간 부족으로 장착불가 확인필요차량은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

○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 후 차량 구매시)

- ① 승용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차는 제외)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해당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②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1·2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차는 제외)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해당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신차(중고차)를 구매한 당시, 조기폐차 할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추가 지원금 지원 가능!
!(신차구매 이후, 추가보조금을 받아내려고 중고 노후경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 신청 불가)!

○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 후 차량 구매시)

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경유차 제외)로 등록할 시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할 시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시 (이륜차·상품용 제외)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 (중고는 100%) 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배기량 환산값 확인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

○ 추가 지원금 - (지게차 또는 굴삭기 폐차 후 차량 구매시)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등록할 시 :

무공해 건설기계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등록할 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또는 정격 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발급자료이고,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명의자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이내 발급자료이고, 확인서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증빙자료 발송 주소(차량번호 등 기재필수)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4,5등급 해당)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4)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예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예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5)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자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4) 말소등록 후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4.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설기계(도로용3종, 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말소 제외)

5.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

1.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3. 3. 2.(목) ~ 2023. 12. 1(금)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li style="padding-left: 20px;">▶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li style="padding-left: 20px;">※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li style="padding-left: 20px;">※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 접수기간내 발송건만 인정

2. 지원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②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보조금 산정 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우편 발송)



③ 차량상태 확인요청

- (소유자) 확인서 수령 후 지정 폐차장에 입고한 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상태 확인 요청!



④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요청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 후 통보(문자메시지 등)
- 차량 소유자는 ②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나서 폐차 말소 진행 (!!차량상태 확인받지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⑤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등 관련 서류(*9쪽 참조)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청구기한 : ②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⑥ 폐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류를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⑦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2.11.1. 이후 차량등록부터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등 관련 서류(*10쪽 참조)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⑦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낸 추가지급 청구서 서류를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3.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폐차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
- (신청대상) 소상공인
- (신청내용)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해당,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 가능
- (제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

!!소상공인 지원가능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수십대 중복 수령 방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4.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폐차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

5.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통보일 이후 점검하며, 점검결과 ‘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함
※ 대상차량 확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
- 수도권 전문폐차업체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출, 멸실, 차량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발송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③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④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⑤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로 통장 사본 1부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7.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2.11.10이후부터 신차등록 소급)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발송**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④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지원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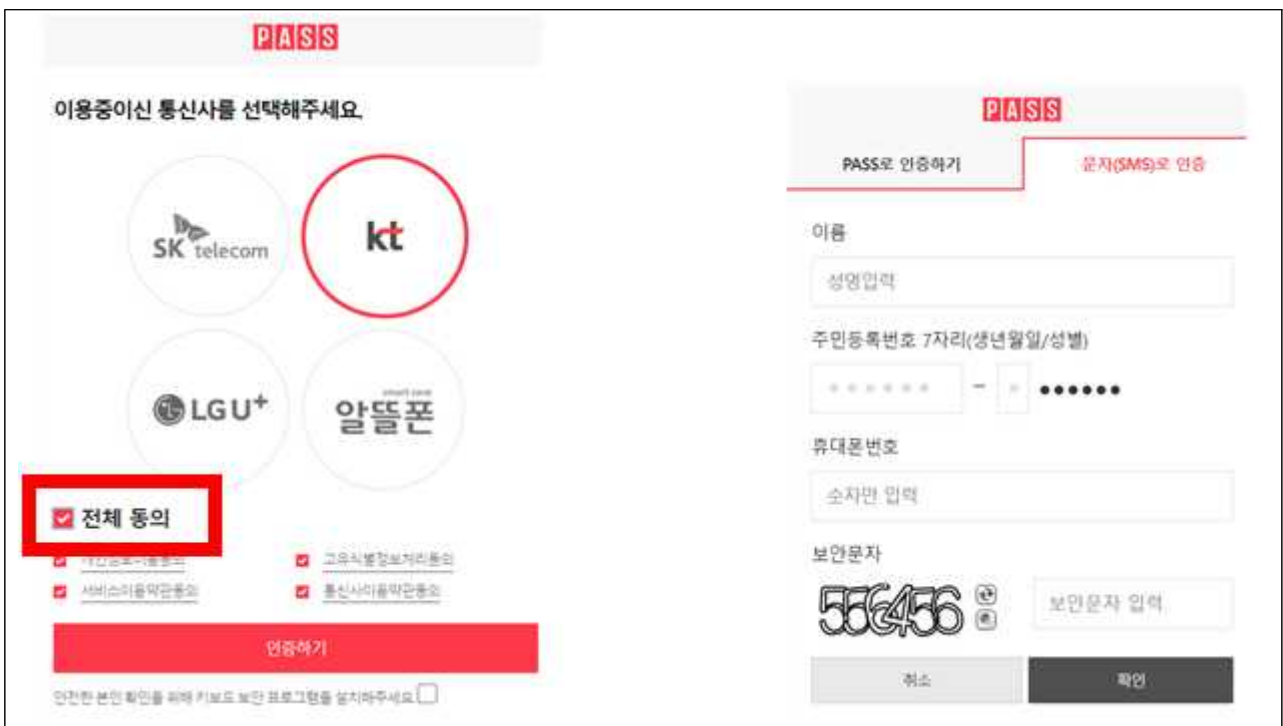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 상속이전시에는 구리시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 민원방지를 위해 구리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운행)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성능점검) 및 폐차업체에서 진행가능
-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 ◎ 조기폐차 상담문의 : ☎ 1577 - 7121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4. [참고 1] 위임장 1부.
5.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6.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1부.
7. [참고 4] 소상공인 확인서 예시 1부. 끝.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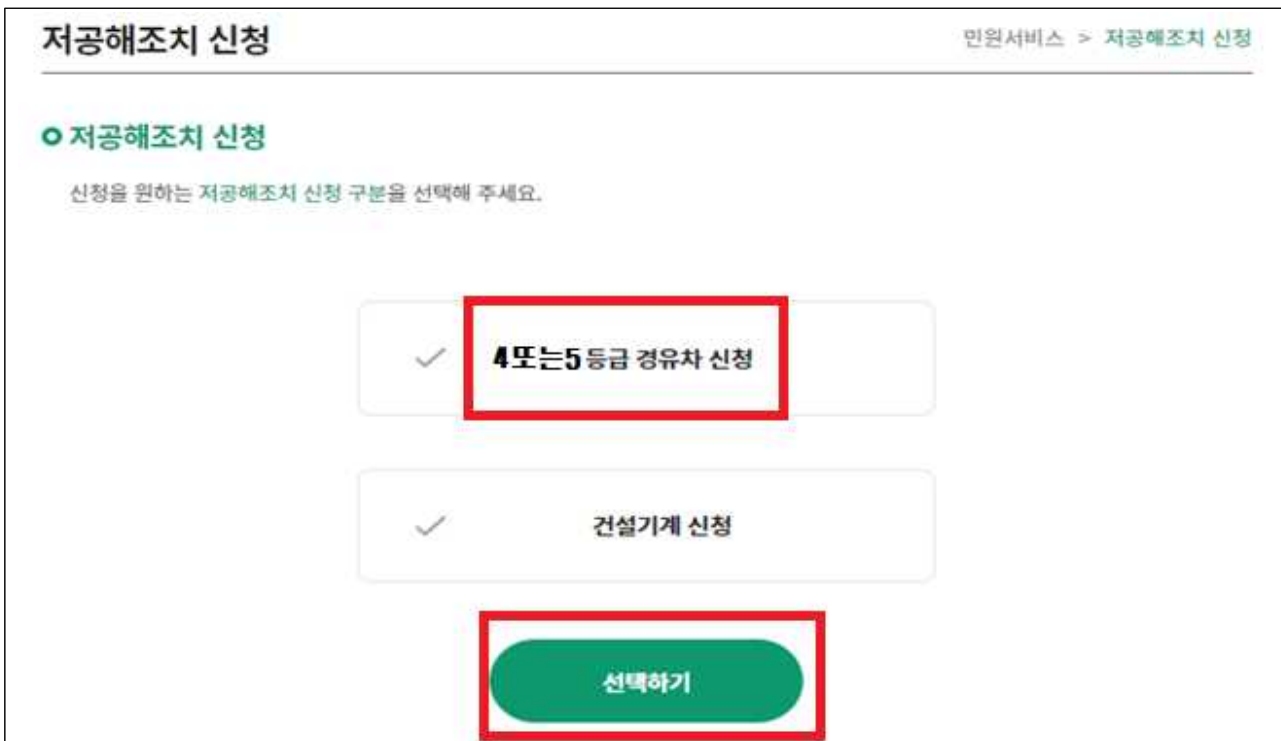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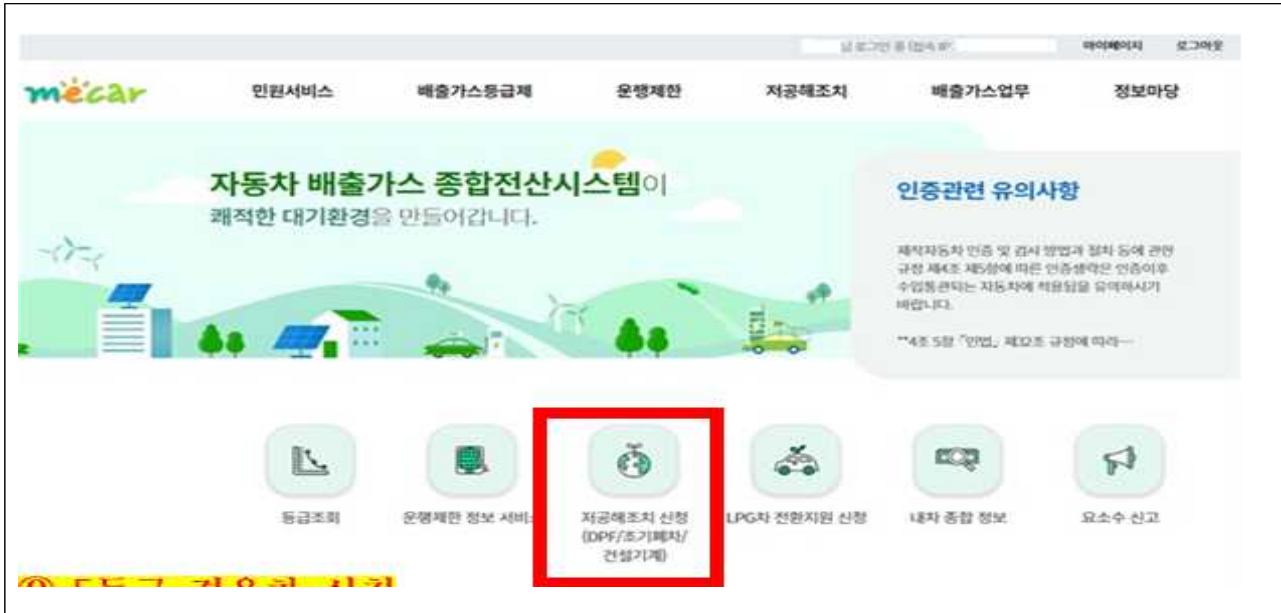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제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 제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제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제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제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제공해신청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장작불가 및 미개별장치 개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조기폐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input type="text"/>		
*휴대전화	0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자동차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차량조회"/>
차대번호	<input type="text"/>		
*저공해조치 방법	<input type="radio"/> 저감장치 부착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기폐차	
차명	<input type="text"/>		
연식	<input type="text"/>		
소유자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신청지자체	<input type="text"/>		
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본인은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목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p>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p> <p>① 등급조회 클릭</p>	 <p>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갑니다.</p> <p>1. 등급조회 버튼 클릭</p>
2	<p>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p> <p>②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p>	 <p>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p> <p>2.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 클릭</p>
3	<p>③ 차량번호 입력</p>	 <p>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p> <p>3. 차량번호 입력</p> <p>*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오.(00710000) *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소유를 확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 차량소유주가 공동행역인 경우 대표행역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표행역자가 아닌 경우 확인시 전화연락 확인바랍니다.

<p>4</p>	<p>④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⑤휴대폰 인증</p>	
<p>5</p>	<p>⑥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p>	

[참고 4] 소상공인 확인서 예시

발급번호 : 0000-0000-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기업이름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구 리 시
주 소 : 구 리 시 구 리 로 구 리 길 99 9층
유효기간 : 9999-99-99 ~ 9999-99-99
용 도 :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